

붙임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\* 시·도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
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고 (구비서류)
		기준	점수	
무주택 기간	20	10년 이상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</li> <li>* 무주택기간은 제27조제3항,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 공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따른다</li> <li>*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지방세 미과세 증명서), 필요 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,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,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</li> </ul>
		9년 이상~10년 미만	18	
		8년 이상~9년 미만	16	
		7년 이상~8년 미만	14	
		6년 이상~7년 미만	12	
		5년 이상~6년 미만	10	
		4년 이상~5년 미만	8	
		3년 이상~4년 미만	6	
		3년 미만	4	
배우자와 훈인기간	20	15년 이상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훈인기간 : 훈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훈인 지속기간</li> <li>* 훈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</li> </ul>
		13년 이상~15년 미만	17	
		11년 이상~13년 미만	14	
		9년 이상~11년 미만	11	
		7년 이상~9년 미만	8	
		5년 이상~7년 미만	6	
		3년 이상~5년 미만	4	
세대원 구성	15	5인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세대원 : 신청자,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)</li> <li>* 주민등록등본, (필요시)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</li> </ul>
		4인	11	
		3인	7	
		2인 이하	3	
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	15	10년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신청자가 특별공급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</li> <li>⇒ 주민등록등본</li> <li>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</li> </ul>
		8년 이상~10년 미만	13	
		6년 이상~8년 미만	11	
		4년 이상~6년 미만	8	
		2년 이상~4년 미만	5	
		2년 미만	3	
소득요건	20	100% 이하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(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대비 소득</li> <li>* 소득입증서류 및 심사방법 등 관련 사항은 '신흥 부부 주택 특별공급 윤용지침(국토교통부고시)'을 준용함. 단, 가구원 수는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수를 의미</li> </ul>
		100%초과~120% 이하	15	
		120%초과~140% 이하	10	
		140%초과	5	
국적취득 여부	10	국적취득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적취득 : 신청자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</li> <li>* 주민등록증,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(상세)</li> </ul>
미성년 자녀 수	가점	미성년자녀	3명이상 5 2명 3 1명 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</li> <li>*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</li> </ul>
세대원 중 장애인 여부		중증장애인	2명이상 5 1명 3	

※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"배점 기준표"(20년 기준 등)를 작성, 사용할 수 있음

※ 동점자 처리기준(월단위로 환산하여 오래된 순으로 함) : 배우자와 훈인기간)무주택기간